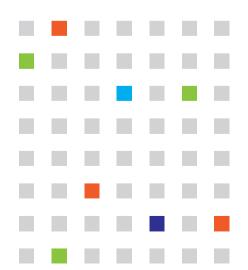


2022년 11월 AML REPORT

- 1. 자금세탁방지(AML) 동향
- 2. 자금세탁행위의 3단계 -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



본 자료는 당행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임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.

1 | 자금세탁방지(AML) 동향 주요기사

(1) 금감원,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제재 본격화_은행 '확인의무' 쟁점

- □ 금감원 조사 결과, 적발된 외환거래 대부분은 국내가상자산(암호화폐)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으며,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더 높게 거래되는 '김치 프리미엄'을 노린 '환차익'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잠정 결론을 냈다.
- □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, "입증 서류를 확인하라는 건 단순 대조가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신생 업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송금했다면, 수상하게 여기고 대응했어야 했다"고 보고 있다.
- □ 은행권 관계자는 "현행법상 은행은 송금 법인의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, 송금 사유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"며, "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송금을 거절했다간, 고객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사실"이라고 설명했다.
- □ 은행들도 지난 9월말 기재부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. 외국환 거래법상 '입증서류 확인 의무'의 범위와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거절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다.
- □ 현재 은행권은 '이상 외화 송금 거래 테스크포스(TF)를 꾸려 금융감독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. 또 관세청과 기업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송금 법인을 잡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.

2 자금세탁행위의 3단계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

(2) 美 재무부, 북한 무기개발을 위한 물자 : 지금 조달 지원 겨냥 제재

- □ 미국 재무부 OFAC(해외자산통제국)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(증)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<mark>고려항공에 근무 중인 북한과 중국 국적자 등을 제재 대상자(SDN) 명단에 올렸다.</mark>
- □ 현재 미국 정부는 기존 대북제재 대상을 위하여 영리 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음
- □ OFAC은 고려항공 관계자와 별도로 지난 8월에 제재했던 <mark>가상화폐 '믹서'업체</mark> 인 '토네이도 캐시'도 제재대상으로 다시 지정함
- □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,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,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짐
- 시사Point : 美정부의 對북한 제재 강화 추세는 지속!!

(3) "비트코인 4.7조원 어치" ...해커 욕실서 5만개 쏟아졌다

- □ 7일(현지시간)AF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이날 타크웹(온라인 암시장) '실크로드'에서 2012년 비트코인을 훔친 제임스 중(32)이라는 개발업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, 약 3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5만67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.
- □ 그동안 사라진 비트코인의 행방을 추적해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지아주(州) 게이즈빌에 있는 중의 집을 급습, 지하실 금고에 보관된 저장장치와 욕실 벽장 속 팝콘 통에 들어 있던 싱글보드 컴퓨터(당일 회로 기판으로 구성된 소형 컴퓨터)에서 비트코인을 확보했다.
- → 시사Point : 美당국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사기 처벌 강화!!



(1) 배치단계(Placemennt)

- ★ 범죄를 통하여 확보한 불법 범죄수익을 금융시스템에 실제로 유입하는 단계
- ◈ 불법 범죄수익을 금융시스템에 유입하는 방법
 - 1. 현금의 형태로 유입
 - 2. 자기앞수표 또는 여행자수표를 현금으로 구입
- □ 고액현금 거래 보고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**일정금액 미만으로 분할** (소액분할입금)하여 거래를 조직적으로 수행함
- ☞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력이나 조직체를 사용함
- □ 위장회사나 전위사업체를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도 함(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체 이용)
- □ 최초에 금융시스템에 자금을 유입하기 전 대량의 현금을 범죄수익 이라는 출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
- ☞ 환전상, 무역관련 서류 위조, 비트코인 등 다양한 방법 등

(2) 반복단계(Layering)

- □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의 출처와 소유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복잡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외형을 정상적인 거래와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함
- □ 반복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
 - ① 역외금융피난처로의 자금이체(전신송금)
 - ☞ 허위서류작성, 전자자금이체 등
 - ② 고가의 귀금속을 매입한 후 재매각함
 - ③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를 통한 입출금의 반복적인 거래와 복잡한 전자이체를 통한 자금 이전 등

(3) 통합(합법화)단계(Intergration)

- ◈ 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재유입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가장함
- ◈ 불법 자금은 합법적인 수익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며, 자금세탁 자들은 세탁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함
 - 예) 고가의 자산 구입, 범죄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재사용
- □ 자금세탁의 마지막 단계로서 반복단계를 거쳐 자금 추적이 어려워진 불법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합법 재산과 통합시키는 단계임
- □ 통합단계를 통하여 불법수익의 출처인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게 됨